## 발의된 UNA 세칙 및 총칙 안내

## 세칙(특별 결의안A)

다음은 발의된 세칙이 승인되는 경우 발효될 실질적인 주요 변동 사항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발의된 세칙에서는 다수의 세부적인 기술적 변동 사항을 통합하고, 불일치를 제거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표현을 개선합니다.

- UNA 이사회의 UBC 임명 이사와 AMS 임명 이사 직책을 폐지하여 모든 이사가 선출직이 되게 합니다(다음 선거까지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이사회가 임명한 이사는 예외).
  - 현행 세칙: 이사회는 회원이 선출한 이사 5인, UBC가 임명한 이사 2인, AMS(UBC 학생회)가 임명한 이사 1인으로 구성됩니다.
  - \* 변경 사유: 이사회에 임명 이사를 포함하는 것에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UNA가 위임받은 임무에는 대학 구내 주민에게 지방 자치 단체 같은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일과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임무를 고려할 때, UNA가 주민들에 의해서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변칙적입니다.
  - ◆ 해설: UNA는 발의된 세칙이 승인되는 경우 1인의 학생을 지정하여 공개 및 비공개 이사회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AMS와 합의했습니다. UBC "참관인-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학생에게는 투표권이없습니다. 발의된 세칙에는 이 지정된 학생에관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UNA이사회에 학생 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AMS의 권리는 UNA와 AMS 간 협약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에 관한 자세한조문은 UNA와 UBC 사이에 맺은 '구내 협약 2020'(Neighbours' Agreement 2020)에포함되어 있으며, 이 협약은 발의된 세칙이승인되면 현행 '구내 협약 2015'를 대체할예정입니다.

- 2. UBC가 비공개 및 비밀 회의를 포함하여 이사회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UNA 회원 2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UBC가이익상 UNA에 대하여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고려될 때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들 회원 중 1인은 UNA 재무 감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현행 세칙: UBC는 UNA 회원을 몇 명이든 임명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주민 회원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 \* 변경 사유: UBC "참관인-참가자" 2인에 대한 조항은 2인의 UBC 임명 이사에 대한 직책을 없애기로 한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UBC 임명 이사들은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이사회에 제시했으며, 상호 이익 문제에 관한 UBC의 견해를 UNA에 제공했습니다. UBC "참관인-참가자"에 대한 조항은 이사회가 이러한 전문 지식과 견해를 계속 접하게 하고 UNA와 UBC 간 상호 지원 관계를 유지하고 함양하게 합니다. UNA에 비하여 UBC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임대 계약에 따라 징수되는 서비스 부과금을 사용할 궁극적인 책임이 UBC에 있기 때문입니다.
- 3. 선출 이사의 수를 6인으로 늘리고, 이사회는 이 수를 7인까지 늘릴 권한이 있습니다.
  - 현행 세칙: 주택 입주 리스 및 임대 계약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출 이사의 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는 3인 또는 4인의 선출 이사 자리가 산출되지만, 현재 그런 자리는 5 개가 있습니다.
  - \* 변경 사유: 이사의 수를 공식으로 정하는 데는 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를 보유하도록 숫자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3인의 임명직을 폐지하면 선출 이사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6 인의 이사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사회는 한 자리를 더 추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 4. 이사의 임기를 현행 약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 \* 변경 사유: 3년 임기는 새로 선출된 이사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뿐 아니라 UNA와 그 회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도 이해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며, 그런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4년 임기(지방 자치 단체 의원 임기)는 헌신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여겨져 UNA 회원의 출마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이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줄입니다. 단, 입후보자의 수가 충원될 자리의 수보다 적을 때는 예외입니다. 또한, 추가 1회 연임을 허용하는 이사회의 재량권을 폐지합니다.
  - 현행 세칙: 선출 이사는 최대 3회 연임하여 총 6년 정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추가 1회 연임에 대한 허락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락 요건은 이사진 65% 이상의 찬성입니다.
  - \* 변경 사유: 이사직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면 새로운 회원이 이사회에서 일하며 참신한 견해를 제시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연임 횟수를 2회로 줄이는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는 여전히 최대 6년 연속 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1회 연임을 허용하는 이사회의 재량권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달리 자리를 채울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사는 재직 임기 수와 관계없이 다시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 이사진 전체에 대한 선거가 2021년부터 3 년마다 치러져야 합니다.
  - **현행 세칙:** 해마다 이사를 선출합니다. 이사들의 임기가 겹치므로 선거마다 대개 2~3인의 선출 이사를 충원하여야 합니다.
  - \* 변경 사유: 발의안 대로 변경하면 선거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UNA 실무진의 시간 소모도 줄어듭니다. 또한, 투표자의 피로가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는 저조한 투표율을 만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면 후보자 전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 해설: 발의된 세칙이 승인되면 2020년에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세칙에 따라, 2018년 11월에 선출된 이사진의 임기는 2020년 연례 총회일에 종료됩니다. 발의된 세칙의 전환 조항에 따라, 이 임기는 2021년 선거 이후 첫 번째 이사회 회의 개시 시까지 연장됩니다.
- 7.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는 그 해의 연례 총회(AGM) 후 11월 말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 현행 세칙: 선거 일정은 AGM 일정과 같습니다.
    연중 선거 투표용지 접수 마감은 그 해 AGM 날짜입니다.
  - \* 변경 사유: 선거 시기는 (i) 발의된 세칙의 요건상 연중 AGM이 당년 9월 30일까지 치러져야 하고 (ii) 발의된 세칙에 선거 절차상 각 단계의 시기를 정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시기 변경은 한여름에 선거 절차가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8. UNA의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즉, 9월 30 일까지) AGM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세칙: 연례 총회는 적어도 매 역년 (calendar year)에 1회 그리고 마지막 연례 총회 개최 후 15개월 안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 변경 사유: 사회단체법(Societies Act)에 따라 AGM에서 제시되는 재무제표는 해당 결산 기간의 종료일이 AGM 날짜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UNA의 회계 연도 종료일은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즉 연말 결산 이외의 재무제표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UNA의 AGM은 늦어도 9월 30일까지 개최되어야 합니다.

- 9. 이사의 보수에 대한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합니다.
  - 현행 세칙: 연봉이 주민 이사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5,500이며, 이사장은 여기에 \$2,750 이 추가되고(즉, \$8,250),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 해설: 발의된 세칙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 2020년 지급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 이사당 \$6,271, 이사장은 \$9,406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조정분이 적용되어 현행 세칙에 따라 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발의된 세칙에는 보수 및 물가 상승률 조정분을 결정하는 더욱 정밀한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 10. UNA 회원 제명 조항을 없애고 회원은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현행 세칙:** 회원은 세칙을 위반하거나 UNA 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명하려면 총회에서 통과된 회원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 변경 사유: 회원이 제명되면 그 회원의 UNA 선거 투표권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가혹하고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사회단체법* 제70조 (2) 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조항이 필요합니다: "세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단체의 일원은 특별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총칙(특별 결의안B)

- UNA의 총칙에는 이 단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이란 해당 단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대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UNA는 UBC와 맺은 협약이 있으며, 현재 '구내 협약 2015'(NA 2015)로 불리우는 이 협약에 따라 UNA 는 이 협약 제3.1조에 기재된 목적을 UNA의 목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UNA의 목적이 그 조항의 목적과 상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발의된 총칙의 목적에 가해지는 작은 변경은 이 목적을 NA 2020과 더욱 잘 조화되게 하는 변경 또는 구문을 개선하는 변경입니다. 또한, "지정된 건물들"에 참조가 추가됩니다. 이는 발의된 세칙에 따라 주민들의 UNA 가입이 허용된 구내의 외부에 있는 특정 건물들입니다.
- 현행 총칙에 있는 첫째 목적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이익을 대학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목적이 총칙에 추가됩니다.
  - a. 지방 자치 단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이것은 NA 2015에 따른 UNA의 주요 기능이지만, 현재는 UNA 총칙에 명시된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니므로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 b. 주민의 이익을 개괄적으로 대표함. 이것은 NA 2015에서 요구하는 목적입니다.
  - c. UBC 캠퍼스의 토지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UBC 및 기타 단체에 그러한 입장을 제시함. 이 목적은 주민의 이익을 개괄적으로 대표함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d. UBC 운영 위원회(Board of Governors)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 대학법(University Act)* 제34조에 따라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함. 운영 위원회는 UNA 이사회가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UNA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 e. 주민과 UBC 학계 간 상호 교류를 조성하고, 이러한 상호 교류의 성사를 지원하며, 주민의 UBC 학술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함. 예를 들어, 이 같은 목적에 대학의 강의, 과정, 프로그램,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증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UNA와 UBC는 발의된 세칙을 UNA 회원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NA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 즉 '구내 협약 2020'(NA 2020)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 2020에는 NA 2015와 마찬가지로 UNA의 목적에 관한 동일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